

우)0318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, 1507호 (광화문 오피시아빌딩) 전화 02)720-5004 / 전송 02)723-5003

2024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재통지

문서번호 : 온협24-78

2024. 9. 30

수 신 : 온천종사자(대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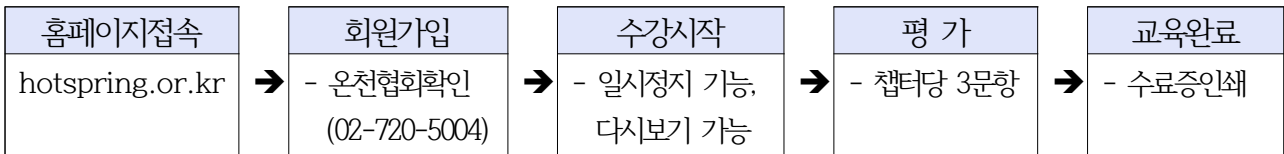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·(특)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제3차 온천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
■ **집합교육** : 정회원이 아닌 온천종사자(다음 집합교육장소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 가능)

구분	일시	세 부 장 소	비 고
1차	2024. 06. 26.(수)	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[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(성당동)]	완료
2차	2024. 09. 25.(수)	동래구청소년수련관 [부산 동래구 문화로 90 동래구청소년수련관]	완료
3차	2024. 10. 17.(목)	아산시청 시민홀 [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)]	
4차	2024. 11. 20.(수)	서울 이북5도위원회 중강당 [서울 종로구 비봉길 64 이북5도청 5층]	
시간	집합교육 당일 14:00 ~ 18:00 [4시간]		
교육비	○ 교육비 40,000원 - 계좌입금 [신한은행 140-009-424040 (특)한국온천협회] - 계좌입금시는 온천명으로 입금(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), 교육 당일 교육장 입장 전 교육비 입금일자 확인요망 - 정회원(당해연도 연회비 납부)은 교육비 면제 ※ 세금계산서 발행 원하시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		

■ **사이버(온라인)교육**

- 정회원에 한하여 이수(2024. 5. 13 ~ 12. 4)할 수 있으며, 집합교육도 선택하여 이수 가능
 - 정회원 : 협회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고, 연회비(24만원)를 납부한 온천종사자
- 접 속 : 연회비 입금 후 협회 확인을 거쳐 온라인강의 시작(수시로 원하는 시간에 교육가능)

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○ 공중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

※ **관련 온천법 : 첨부 참조**

온천법



[시행 2018. 4. 19.] [법률 제14795호, 2017. 4. 18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온천"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3. "온천종사자"란 온천을 공중(公衆)의 목욕용이나 음용(飲用)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26조(온천종사자 교육)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,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,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.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3.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·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

온천법 시행규칙

[시행 2017. 7. 26] [행정안전부령 제1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19조(온천종사자 교육)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,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